

국고채권 매입(2020-001) 관련 업무참고 사항

- 처리 순서 : 입찰(D일) →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→ 채권반환 및 국채매입 신청(D+2영업일)

□ 입찰(D일)

- 응찰금리 개수 : 기관별로 종목당 7개까지 각각 다른 금리로 응찰 가능.
단, 7개 이하라 하더라도 동일 금리로는 응찰 불가
 - 입찰 신청(BOK-Wire+)
 - 증권경쟁입찰
 - 증권경쟁입찰 내역 입력관리
 - 국채매입 입찰정보 조회 및 응찰
- ※ 2020.7.15. 국채매입회차 : 2020-001

□ 보유기간 확인서 제출(D+1영업일)

- 낙찰된 모든 종목에 대해 작성하며 국채거래용 신고인감을 날인하여
한국은행 증권팀 앞으로 FAX 송부하고 전화로 통지할 것
(Tel. 759-4740, 4754 Fax. 759-4750, 4753)
- 보유기간 확인서는 세무증빙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전산원장을
확인한 후 정확하게 작성할 것(특히 이동평균법을 따르는 기관은
매수일 산출에 유의)

□ 채권반환 신청(D+2영업일)

- 국채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된 국고채권이 한국은행 국채
등록부상에 낙찰기관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하므로

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국고채권은 매입 신청을 하기 전에
반드시 SAFE시스템의 채권말소등록확인화면에서 먼저 입력해야 함
[한국예탁결제원 이민정 주임(☎ 3774-3394), 김지수 주임(☎ 3774-3391)]

□ 국채매입 신청(D+2영업일) :

- 원천징수액이 발생한 기관은 **국채매입 실행 전 반드시** 아래의 **한은 금융망 화면** 또는 한국은행 증권팀(759-4740, 4754) 앞으로 전화하셔서 **금액을 확인 후** 신청 요망
- 신청(BOK-Wire+)
 - 국공채시스템 : 정보조회 → 국공채 환매정보

<주요 입력내용>

- 상단
 - ① 증권 코드 : 07(국고채권)
 - ② 회 차 일 물 : 보유기간확인서상 대상증권종목회차
 - ③ 신청인구분 : “3(금융보험법인)”으로 선택
 - ④ 자사신탁위탁혼합 : 1(자사)
 - ⑤ 보유 기간 : 보유기간 확인서상의 보유기간과 일치해야 함
 - ⑥ 단위환매가 : 10,000원당 세전단가(환매단가)
 - ⑦ 총환매금액 : 상환액면금액(고객예탁분 : 0)
 - ⑧ 총발행가액 : 상환액면금액(직접 입력)(고객예탁분 : 0)
 - ⑨ 총환매가액 : 10,000원당 세전단가 × 총환매금액 / 10,000 (고객예탁분 : 0)
- 단위발행가별 등록환매 신청금액
 - ① 매출일자 : 발행일자가 아니라 매출일자임에 유의 (3쪽의 종목별 매출일자 참조)
 - ② 단위발행가 : 10,000.00
 - ③ 환매금액 : 상환액면금액 ⇒ 추가

□ 기 타

- D+1일에 제출된 보유기간확인서 내용대로 국채환매정보(Bok-Wire+)가 입력되므로 제출내용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정보를 수정해야만 국채매입이 수행됨에 유의
- 매입가액은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* 및 특별징수세액**(지방소득세)을 차감한 후 지급
 - *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2010.1.1.이후 보유기간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
 - ** 「지방세법」(2015.1.1.시행)
- 한은금융망(BOK-Wire+) 마감시간을 감안하여 **보유기간 확인서는 15시 00분까지 제출, 국채매입 신청은 15시 50분까지 완료**

□ 보유기간확인서 작성시 참고사항

번호	신청 종목명	만기일
1	02250-2106-03	2021.6.10.
2	02000-2103-05	2021.3.10.
3	04250-2106-10	2021.6.10.

※ 필 득

I. 소득세법 시행령

[시행 2016.9.23.] [대통령령 제27506호, 2016.9.22., 타법개정]

제22조의2(국채 등의 이자소득) ① 생략

② 생략

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(이하 "물가연동국고채"라 한다)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. <신설 2007.2.28., 2013.2.15., 2016.2.17.>

II.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

<대통령령 제 24356호 2013.2.15.>

제4조(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

